

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(설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2508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3. 16.

발 의 자 : 설훈 · 박남춘 · 진선미

이동섭 · 정인화 · 인재근

황희 · 신창현 · 윤호중

김두관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하고,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.

그러나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규정, 시행계획 수립 시 재원 마련에 대한 규정,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에 관한 규정이 없는 등 제도상 미비한 부분이 있음.

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, 시행계획 수립·시행 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, 기본계획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(안 제4조).

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수립하여야”를 “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기본계획을”을 “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”로, “공고하여야”를 “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기본계획의”를 “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·공고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<p>⑤ 해양수산부장관은 <u>기본계획</u>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	<p>-----.</p> <p>⑤ ----- <u>기본계획</u> 및 <u>시행계획의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·공고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</p>
--	---